

<신탁계약서>

HYUN STEADY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554B5D30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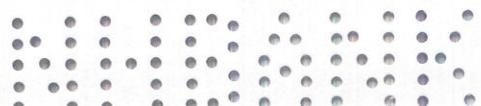
제 1 장 총칙

- 제 1 조(목적)**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자산운용 협(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와 신탁업자인 농협은행(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자로만 이루어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249 조의 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교부, 투자운용전문인력 변경, 환매연기, 부실자산 상각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회계감사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③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9조 제7항 또는 법 제9조 제9항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만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법 제9조 제19항에 따라 수익자의 자격과 총수(100인 이하)가 제한되며, 집합투자증권의 분할전매가 일부 제한되는 일반 사모투자신탁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3.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채권혼합형"이라 함은 자산총액 중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 편입한도가 50%이하인 상품을 말한다.
6. "재간접형"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사모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0.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1. "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12. "협회"라 함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HYUN STEADY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5 호"



라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채권혼합형
3. 재간접형
4. 개방형
5. 추가형
6. 사모형
7.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③이 투자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다.

제 3 조의 2(투자신탁의 가입 제한) 이 투자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에 한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 271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2. 전문투자자로서 3 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별표 2에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제 3 조의 3(투자권유 등) ①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전문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과 같은 법 제 18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 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 5 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6 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 27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00 억좌로 한다.

제 7 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 6 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 249 조의 8 제 3 항에 따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 2 장 수익증권 등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 2 조 23 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 11 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1 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익자는 제 3 조의 2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갖춘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의 결과 법 제 9 조제 19 항에서 정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 제 12 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②집합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
· 신탁계약서 · 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
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
다.
- ⑤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 ⑥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를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⑦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합병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 3 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 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없는 자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집합투자업자가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
세에 따라 취득 · 처분 등의 결과를公正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 · 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한다.

제 14 조(투자목적) ①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채권,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 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채권"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3.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5.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6.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7. 증권의 차입
8. 법 시행령 제6조4항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단, 상장되어 있는 스팩에 투자하거나 스팩 상장을 위한 공모투자에 한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 대여를 말한다)
2. 만기가 1년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 16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5 조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2. 국내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3.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의2. 주식과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대한 투자는 제16조 1호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5.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6.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7.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금전의 차입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차입과 금전차입을 합산하여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운용 및 투자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전차입과 증권차입의 합계액이 이 사모펀드 재산(순자산 기준)의 50%를 초과하여 운용하지 못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 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 다.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3.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되는 운용 및 투자 행위

제 18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3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3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6 조 제 4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③ 제 2 항제 5 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 19 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 20 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 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재산과 거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투자신탁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8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7조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및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기준가격 산정 시 이를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 제 21 조(수익증권의 판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투자자는 법 제9조 제5항에서



정의하는 전문투자자로 한정한다.

③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 21 조(수익증권의 판매 제한 등)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49인 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수를 산출함에 있어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함)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제1항에 따른 수익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③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제3조의2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갖춘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제 22 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 산정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금전 등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 23 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인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 24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제23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환매연기)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3영업일(15시30분 이후 제4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⑧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투자자는 법 시행령 제256조의 사유로 인한 환매연기로 환매대금이 집합투자규약 제23조 및 제24조를 따르지 않고 환매재개 후 지급되더라도 환매연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청구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6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제26조(집합투자재산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자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기준가격 산정 및 제시)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그 산정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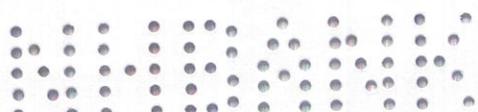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 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시 제35조의2에 의한 성과보수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한다.

제28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①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 (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②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49 조의 8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0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수익증권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의한 이익금을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 31 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 10 조 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 32 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 41 조 제 1 항 및 제 2 항(제 2 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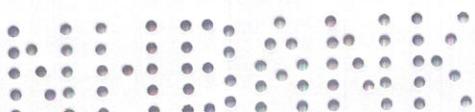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3 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 30 조 및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7 장 수익자총회

제 34 조(수익자총회 및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이 투자신탁은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49 조의 8 제 4 항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 35 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 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펀드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하고,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10.6
2.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1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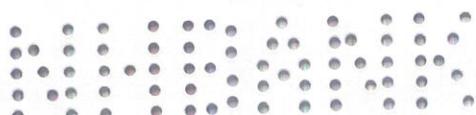
제 35 조의 2(성과보수)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35 조제 3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보수 이외에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취득한다.

② 성과보수는 수익자 계좌별로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제 3 항에 따라 계산되며, 제 4 항에서 정한 성과보수 인출시점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며, 성과보수의 계산기간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한 후 첫 회계기간 말일에 도달하는 경우, 수익자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기간 말일까지
2. 1 호에 따른 회계기간 이후에 회계기간 말일에 도달하는 경우, 회계기간 초일부터 매 회계기간 말일까지
3.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회계기간 초일부터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다만, 1 호에 따른 기간 내에 환매하는 경우,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③ 성과보수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기준수익률 : 6.0%
2. 기준수익 : 성과보수 계산기간 초일의 투자신탁 원본 \times (기준수익률 \times 성과보수 계산기간 경과 일수 / 365)



2. 기준수익 : 성과보수 계산기간 초일의 투자신탁 원본 \times (기준수익률 \times 성과보수 계산기간 경과 일수 / 365)
3. 초과수익 : 성과보수 계산 전, 성과보수 계산시점 투자신탁재산 순자산총액(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분배금을 포함하여 산정) - 성과보수 계산기간 초일의 투자신탁 원본 - 기준수익
4. 성과보수 : 초과수익 \times 15%

④ 제 3 항에 따라 계산된 성과보수액이 영(0) 이하인 경우 성과보수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 3 항에 따라 계산된 성과보수를 다음 각 호에 정한 날에 취득한다.

1. 이익분배금 지급일
2. 수익증권의 환매시(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계산하여, 환매대금지급일에 인출)
3. 수익증권의 전부 해지시(상환금 지급일)
4.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성과보수산정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집합투자업자와 판매회사(또는 집합투자업자와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⑥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투자운용인력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1. 투자운용인력의 경력사항

성명	직위	주요 경력 및 이력		
오종호	차장	2019.03 ~ 현재	자산운용현 펀드운용팀 운용역	
		2010.07 ~ 2014.03	DB 금융투자 FICC 운용팀	
		2009.06 ~ 2010.01	미래에셋대우증권 상품운용팀	

2. 운용현황 (2023년 2월 28일 기준)

펀드명	설정액(원)	NAV(원)	기준가
HYUN STEADY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5,755,614,137	5,626,941,105	1073.08
HYUN STEADY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	3,473,716,788	3,319,484,648	1028.97
HYUN STEAD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호	5,229,746,990	5,309,368,578	1103.25
HYUN STEADY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3호	2,195,884,147	2,188,754,623	1019.33

제 35 조의3(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 수취 투자신탁으로 성과보수 수취 투자신탁의 경우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제 36 조(판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② 제 1 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 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 비용
5.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법률 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 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 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 9 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39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된 투자대상자산, 투자전략 및 운용 제한(금전차입 등을 포함한다) 등의 변경
 2.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3. 신탁업자의 변경(제40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 40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③ 신탁업자의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 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및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 41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 42 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41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41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챈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 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챈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챈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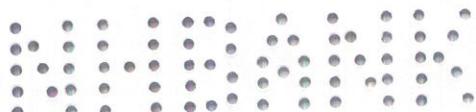
제 9 장 보칙

제 43 조(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25조의2 제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 44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 45 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공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또는 「상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공시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 46 조(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이하 "위법행위 등"이라 한다)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 47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 48 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9 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4층 (신사동, 제이타워)

주식회사 자산운용 현

대표이사 이 기 종 (인)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수탁업무센터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석 용 (인)

